

개정회계예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 용어의 정의)

재무부가 지난 8월 9일 예산회계법
동법 시행령 및 계약사무처리 규칙이 전문 개정,
시행함에 따라(재무부회계 제2210-1924)
본 협회는 하위규정의 체계를 통일하고 전체 사업 내용의
확정 및 일괄발주가 곤란한 공사의 계약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정회계예규」를 제정한다.
이를 참고로 하여 회원사의 계약업무 집행에
착오없기 바란다.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 요령

(회계예규 2200. 04-126-4, 1990. 8. 15)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범위와 이를 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시행령 제70조 및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항만시설, 어항시설, 도로, 하천, 농지개량공사 및 지하철공사로서 성질상 전체

사업내용의 확정 또는 일괄발주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단일공사”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단일공사”라 함은 당해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분할계약의 금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구조물 또는 단일공사를 분할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계획서나 설계서 등에 의하여 공구별로 분할 계획된 공사로서 이행기간, 성질,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일괄발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시설, 어항시설, 도로, 하천, 농지개량 공사 및 지하철공사의 경우
2. 건설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사중 조경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사에 있어서의 조경공사의 경우
3. 다른 법률(예: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사의 경우

부 칙

1. 이 회계예규는 1990. 8. 15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 04-126-3 “단일공사의 집행요령”을 회계예규 2200. 04-126-4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회계예규 2200. 04-110-5, 1990. 8. 15)

1. 임차의 정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호의 “임차”라 함은 임차인이 사용료를 지급하고 임대인의 시설 또는 점포를 자기의 지배하에 점유하고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 바 필요시마다 위탁 또는 지정형식으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임차로 볼 수 없다.

2. 공사예정금액의 정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32조 제2항의 “공사예정금액”은 예정가격에 관급자재대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정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 제3항의 “공종별목적물 물량”이라 함은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발주자가 인수하는 물량을 말한다.

부 칙

1. 이 회계예규는 1990. 8. 15부터 시행한다.
2. 이 회계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 04-110-4 “용어의 정의”를 회계예규 2200. 04-110-5 “용어의 정의”로 한다.